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92

발의연월일: 2025. 3. 6.

발 의 자:오세희·김승원·김 윤

임호선 · 이재관 · 이해민

박지원 · 채현일 · 서왕진

박희승 · 위성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 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(PG, Payment Gateway)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와 관련하여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(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)만을 반영하도록 하고,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8조의2(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) ① 전자금융업자(제28조제2 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(이하 이 항에서 "적격비용"이라 한다)을 산정하여야 하며,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적격비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 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- 제38조의3(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) 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매출액(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

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,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가맹점(이하 이 조에서 "영세가맹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 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8조의2(가맹점수수료율의 차
	별금지 등) ① 전자금융업자(제
	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
	고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
	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
	같다)는 가맹점과의 가맹점수
	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
	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
	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
	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	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
	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
	있어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
	이 합당한 비용(이하 이 항에
	서 "적격비용"이라 한다)을 산
	정하여야 하며, 가맹점이 제공
	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
	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여서
	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적격비
	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	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
	하여야 한다.
	③ 금융위원회는 그 밖에 전자

<신 설>

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 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야 한다.

제38조의3(영세가맹점 우대수수 료율) 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매출액(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,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가맹점 (이하 이 조에서 "영세가맹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